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209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4. 2.

판결 선고 2021. 5.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1,179,023원 및 그 중 235,943,882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43,173,701원에 대하여는 2020. 8. 13.부터 각 2020. 10. 25.까지는 연 8%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에 대한 부분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한 부분 :

가. 주위적으로,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1.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9. 대구지방법원구미등기소 접수 제1367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자로 체결된매매계약을 90,885,1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90,885,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 및 C은행으로부터의 금원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순번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12. 9. 26.	D	47,500,000	2013. 9. 26. (2020. 9. 18.로 연장됨)	중소기업은행
2	2013. 10. 10.	E	45,000,000	2014. 10. 8. (2020. 9. 29.로 연장됨)	C은행
3	2018. 5. 28.	F	261,000,000	2028. 5. 28.	C은행
4	2018. 5. 28.	G	63,000,000	2019. 5. 28. (2020. 5. 28.로 연장됨)	C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주채무를 대신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주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1, 2 (생략)

3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기보(원 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 니다.

제10조(상환범위)

1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 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

한 지연배상금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0.6. 1. 이후 주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손해금율을 연 8%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 A은 2020. 3. 1. 동생인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9.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이 C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C은행은 2020. 5. 2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하여 '2020.3. 31.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중소기업은행은 2020. 5. 1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순번 1과 관련하여 '2020. 5. 11. 이자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각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받은 원고는 C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대위변제 이후 원고가 회수한 금액을 제한 잔존 대위변제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위변제일	상대방	대위변제금	잔존 대위변제금
1	2020. 7. 28.	C은행	43,133,167원	43,023,137원 (대위변제금에서 2020. 7. 28.자 회수금액 110,030원을 제한 금액)
2	2020. 7. 28.	C은행	132,743,958원	132,743,958원
3	2020. 7. 28.	C은행	60,176,787원	60,176,787원
합계(순번 1 내지 3)				235,943,882원
4	2020. 8. 12.	중소기업은행	43,238,321원	43,173,701원 (대위변제금에서 2020. 8. 12.자 회수금액 64,610원을 제한 금액)

3) 한편 위 2)항 기재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추가보증료로 593,410원이 발생하였고(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 원고는 가처분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1,468,0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81,179,023원 및 그 중 235,943,882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43,173,701원에 대하여는 2020. 8. 13.부터 각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8%'에 따라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각호는 '원고가 주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제1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손해금(제2호), 권리의 보전등을 위한 비용과 추가보증료 등(제3 내지 5호)을 갚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가 2020. 7. 28. 및 2020. 8. 12. C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당시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 ③ 원고의 C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1 235,943,882원 및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43,173,701원의 잔존 변제금이 각 존재하는 사실, ④ 원고는, 원고가 2020. 6. 1. 이후에 주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손해금율을 '연8%'로 정한 사실, ⑤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로 트 593,410원이 발생한 사실 및 원고가 권리보전비용 등으로 2 1,468,03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서 281,179,023원(= 1 235,943,882원 + 43,173,701원 + € 593,410원 + @ 1,468,030원) 및 그 중 ⑤ 235,943,88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C은행에 위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0. 7. 29.부터, 43,173,70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해당금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5.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인 2020. 7.경 및 2020. 8.경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인 채무 총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1,787,558,700원 이상이었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1,823,294,209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피고 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6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는 시가 합계 177,70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

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A이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본 주장 자체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는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B에 대하여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1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90,885,191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177,704,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H 주식회사의 각 근저당권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 86,819,209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위 90,885,19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갑 제1, 3,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총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②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3. 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3. 31. 및 2020. 5. 11.에 C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연체로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③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20. 3.경부터 그 후에 이르기까지 위 2항 기재 보증사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④ 원고가 2020. 7. 28. C은행에 대하여, 2020. 8. 12.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피고 A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채권의 실제 발생)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판결 등).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823,294,209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목록	액수(시가)
1	구미시 I 대 183㎡ 및 지상 단독주택 (이 사건 각 부동산)	177,704,000원
2	구미시 J 공장용지 중 1719.06/6612.5 지분	1,606,460,200원
3	위 순번 3 대지 지상 K동 단층공장 991.8㎡	
4	위 순번 3 대지 지상 L동 단층공장 66㎡	
5	위 공장 내 기계기구	
6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710,174원
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2,996,908원
8	H에 대한 예금채권	3,422,927원
	합계	1,823,294,209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C은행, H,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0,186,225원, ②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1,463,000,000원, ③ H에 대한 대출금채무 86,819,209원,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26,852,991원, ⑤ M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40,630,000원, ⑥ 주식회사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 ⑦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원 및 임금채무 8,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위 1 내지 ⑦ 채무의 합계액인 1,750,488,425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나)항의 1 내지 7채무 외에도 ① H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10,939,807원, L O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26,130,498원, 『건강·요양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채무4,190,280원 및 ㄹ 재산세 납부채무 2,687,150원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에게 위 (나)항 기재 소극재산 외에 위 7 내지 ㄹ 기재 채무상당액의 소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4호증(H의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서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4. 14. 내지 2020. 4. 15.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 A의 H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액이 10,939,807원 가량이라는 내용이고, L 갑 제13호증의 1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2020. 6. 4.자 지급명령)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6. 3.을 기준으로 한 O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원금이 26,130,498원 가량이라는 내용이며, 『갑 제13호증의 5(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7. 23.자 교부청구서)와 ㄹ 갑 제13호증의 8(구미시장의 2020. 8. 21.자 교부청구서)은 각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3.경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건강·요양보험료등이 4,190,280원, 재산세 등이 2,687,150원이라는 내용일 뿐이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위 (나)항의 1,750,488,425원]은 적극재산[위 (가)항의 1,823,294,209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다)항의 ㄹ 내지 ㄹ 채무액 전부를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 합계액은 여전히 같은 시기 적극재산 합계액인 1,823,294,209원에 미치지 못하는

1,794,436,160원[= 위 (나)항의 1,750,488,425원 + 3 10,939,807원 + 2 26,130,498원 + 4,190,280원 + 2 2,687,150원]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들이 2020. 3.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15,000,000원의 지급은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차용금채무 상환으로, 잔금135,000,000원 중 L 8,000,000원의 지급은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임금채무 상환으로, € 87,000,000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 86,819,209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각 같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B이 2020. 3. 11. 피고 A에게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을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3.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77,704,000원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2020. 3. 16. '2020. 3.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 1,685,590,209원으로, 소극재산이 그보다 적은 하여 피고 A의 적극재산이 1,640,669,216원으로 각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2),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823,294,209원	1,750,488,425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변동 내역	-177,704,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합계액)	-15,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액)
	+40,000,000원 (피고 A이 2020. 3. 11.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매매대금)	-8,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임금채무액)
		-86,819,209원 (피고 A이 인수한 피고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1,685,590,209원	1,640,669,216원

(4)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B을 상대로 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섭, 판사 나혜선, 판사 김준철

1) 원고는 © 건강·요양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채무 4,190,280원 및 @ 재산세 납부채무 2,687,150원을 피고 A의 소극재산 계산액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위 각 채무를 피고 A의 소극재산 내역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전체 소극재산 규모가 "1,787,558,7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위 각 채무도 피고 A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 합계액을 앞서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1,794,436,16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소극재산은 1,684,616,951원(= 1,794,436,160원 - 15,000,000원 - 8,000,000원 - 86,819,209원)이 됨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A의 적극재산 1,685,590,209원을 초과하지 않는다.